

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- 부 령 : 제432호
- 공포일자 : 2007. 11. 23
- 전문참고 : 산업자원부(www.mocie.go.kr)

◎ 개정이유

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정하고, 설계업자·감리업자의 선정절차 간소화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◎ 주요내용

가.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신고(안 제 27조제1항제3호 신설)

- ① 설계업 간(종합·전문1종·전문2종) 또는 감리업 간(종합·전문)의 종류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가

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, 이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업무상 혼란이 있었음.

- ②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에 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고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.
- ③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시·도 및 관련업체 등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.

나. 설계업자·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(안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)

- ① 참여기술자 등이 상훈을 받은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상훈가점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을 일부 조정함.
- ② 상훈 취득자의 영입을 위한 관련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, 관련업자 선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◎ 시행일

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제21조(감리원의 조정 등) ① (생략)		제21조(감리원의 교체 등) ① (현행과 같음)	
	②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	② ----- -----.	-----.<단서 삭제>
	제21조의3(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 등)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 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영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		제21조의3(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 등)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 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감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4 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 지연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
	1.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			
	2. 공사감리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			
	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		② -----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자가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<u>별지 제27호의4 서식의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</u> 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<u>별지 제27호의5 서식</u>----- -----.</p>
<p>제25조(설계업·감리업의 등록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(제1호 또는 제3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)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</p>	<p>제25조(설계업·감리업의 등록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「전자정부법」----- -----.</p>
<p>1.~3. (생 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)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설계업(감리업)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(전력기술인,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7조(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) ①----- -----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.</p>
<p>1.·2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이 있는 경우 <u>가. 등록증 원본</u> <u>나.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</u>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
<p>3. (생 략)</p>	<p>② ----- ----- 「전자정부법」 ----- -----.</p>
<p>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(제1호 또는 제3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)를</p>	<p>-----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.</p>
<p>1.~3. (생 략)</p>	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, 대표자·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④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,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청접수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제3항 후단에 따라 시·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④ ----- 제1항제4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⑤ (생 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의2(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)</p>	<p>제27조의2(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)</p>
<p>① ~ ⑥ (생 략)</p>	<p>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⑦ 시·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5호의 5서식에 따라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</p>	<p>⑦ ----- ----- 선정하거나 변경----- ----- 이 경우 단체는</p>
<p>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
<p>제28조(등록증의 재교부신청 등)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주소지가 다른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로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(감리업)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.</p>	<p>제28조(등록증의 재교부신청 등) ①----- ----- 때----- ----- 각 호-----</p>
<p>1. (생 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등록증 원본(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주소지가 다른 시·도로 변경된 경우)에 한한다)</p>	<p>2. ----- 경우----- -----</p>
<p>② (생 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9조의2(설계업·감리업의 양도·양수신고 등)</p>	<p>제29조의2(설계업·감리업의 양도·양수신고 등)</p>
<p>① (생 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(감리업)양도·양수신</p>	<p>② 제1항에 따른-----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고서 및 설계업(감리업)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1. 양도·양수의 경우 가.·나. (생략) 다. 양도·양수에 관한 <u>신문공고문</u> 사본 라.~바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2. 법인합병신고의 경우 가.~다. (생략) 라. 합병에 관한 <u>신문공고문</u> 사본 마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완납증명서(양도신고에 한한다)를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④~⑤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----- <u>각호</u>-----.</p> <p>1.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----- <u>공고문</u> ----- 라.~바. (현행과 같음) <u>사. 설계·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)</u></p> <p>2. ----- 가.~다. (현행과 같음) 라. ----- <u>공고문</u> ----- 마. (현행과 같음) <u>바. 설계·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)</u></p> <p>③----- ----- <u>「전자정부법」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 부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 (설계업·감리업의 양도·양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·양수 또는 법인합병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③ (설계업자·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계업자·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</p>

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(www.keea.or.kr)에서 확인하세요.